

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5.13)

1.주요골자

- 가.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음(안 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).
- 나.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,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음(안 제6조).
- 다.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매 4년마다 축산업자중에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함(안 제7조).
- 라.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가축 사육두수 또는 축산물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마. 거출금의 한도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(수납기관)에게 위탁할 수 있고,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의뢰를 거부할 수 없음(안 제11조).
- 사. 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 소비홍보사업,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,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아.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5조).